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05.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04.29. 임준희·임정옥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05.01.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460호).

2. 제안이유

양천구 어르신의 알권리 확보를 위해 어르신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식지 발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알권리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식지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정비함(안 제5조).

다. 명예기자 등 위촉에 대해 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편성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 어르신들의 알권리 확보 및 적극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위해 구에서 발행하는 어르신소식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기 운영 중인 양천구 소식지 및 어린이 소식지 운영에 대해 현 운영 방식에 맞춰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하고 있는 바, 간략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비한 것임.

- 안 제2조에서는 양천구가 발행하는 소식지를 “양천구소식지”, “어르신소식지”, “꿈나무 소식지”로 명확히 그 종류를 구분하여 정함.

- 안 제3조에서는 현행 양천구소식지 이외에 신설되는 어르신소식지와 꿈나무소식의 발행 회수와 시기를 정한 바, 양천구소식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두고, 어르신소식지와 꿈나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참고로 현재 조례의 근거없이 발행 중인 꿈나무소식지의 경우 분기별 1회 발행 중에 있음.

-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려는 것은 제2항에서는 신설되는 어르신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명확히 범위를 정하고, 제3항에서도 꿈나무소식지의 게재내용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소식지 주요 구독자별로 맞춤식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봄.

- 안 제10조에서는 소식지 운영의 위해 위촉하는 명예기자의 종류와 임기에 대해 정한 바, 제1항에서 양천구소식지는 30명 이내, 어르신소식지는 15명 이내, 꿈나무소식지는 70명 이내로 정한 것은 현재 위촉되어 운영 중인 양천구소식지와 꿈나무소식지 명예기자는 현

위촉인원 및 향후 확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규모를 반영하고 신설되는 어르신소식지의 경우 15명 이내로 위촉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모를 정한 것이며, 제2항에서 명예기자의 임기로 양천구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꿈나무소식지의 경우 초등학교는 매년 학년에 변동되고 6학년의 경우 졸업으로 그 신분에 변화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임기를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탄력적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봄.

- 그 밖에 개정된 내용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 참고로 2020년도 편성된 어르신소식지 발행 관련 예산은 “시니어소식지 발행” 10,900,000원이 기 편성되었으며, 어르신소식지 명예기자 활동 사례비 및 자료제공자 사례비는 미편성되어 향후 예산확보가 요구됨.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